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검 토 보 고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의 근거 마련〉

■ 박찬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71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3
2. 제정안의 체계	9
3. 총괄 검토의견	11
V . 주요 항목별 검토	19
1. 목적(안 제1조)	19
2. 법인 및 설립(안 제2조·제3조)	22
3. 부설기관 및 정관(안 제4조·제5조)	24
4. 임원, 이사회 및 총장(안 제6조·제7조·제8조)	26
5. 평의원회(안 제9조)	29

6. 사업연도 및 출연금(안 제10조·제11조)	31
7.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안 제12조)	35
8. 수익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창업지원(안 제13조·제14조·제15조) ...	37
9.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지원·조정 등(안 제16조·제17조)	40
10. 학위과정 및 학생 등(안 제18조·제28조·제29조)	42
11.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안 제19조·제20조·제26조·제27조)	45
12. 교원·연구원 및 교원인사 등(안 제21조~제25조)	47
13. 보칙 및 벌칙(안 제35조~제40조)	50
14. 부칙	52

※ 참고자료

1.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KS J 1009)	55
2.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추진방향(2025.9.)	57
3.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일반 현황	58
4. 광주과학기술원(GIST) 일반 현황	60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일반 현황	62
6.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일반 현황	6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찬대의원 등 29인

나. 발 의 일 : 2026. 4. 28.

다. 회 부 일 : 2026. 4. 29.

II. 제안이유

바이오는 현재 먹거리인 동시에, 미래 먹거리임. 최근 글로벌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2030년까지 주요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집중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및 차세대 신약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첨단바이오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교육·연구 교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춘 인천광역시에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기관의 운영과 학사·연구,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바이오 주권을 확립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첨단바이오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지원을 위하여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정관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
- 다. 총장·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되, 총장은 상근,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총장·이사·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 라. 기관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발전계획, 교육·연구 운영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 국유·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대부·사용, 수익사업, 기술이전·사업화·창업지원 법인 설립 및 발전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9조).
- 바.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 과정을 두고, 학위수여·학생 정원·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
- 사. 교원·연구원 및 과학영재학교 교직원에 관한 사항과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절차, 정년보장교원 및 양성평등 임용계획 제도를 마

련함(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연구계획서·연구보고서 제출, 공동연구, 연구시설 공동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원·조정·감독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과태료 및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등 설립 절차를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및 부칙 제2조).

IV.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의약·의료를 포함한 식품, 화학·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¹⁾으로,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 중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화학적 합성을 통해 생성되는 합성의약품에 비해 생산공정이 복잡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반면, 특정질환에 대한 표적치료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산업적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23년 17,487억 달러)는 지속 확대 중(~'28년, 연 4.7%↑)이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23년 5,649억 달러)은 더욱 빠르게 성장(~'28년, 연 11.9%↑)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역시 2023년 36.5억 달러에서 2028년 64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²⁾.

1) 참고1 국가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P55 참조

<글로벌 및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자료: [관계부처합동]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2025.9.)

- 또한, 글로벌 주요 바이오제약사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블록버스터 의약품(10억달러 이상의 매출) 70개를 포함한 약 200개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가 예정되어 ‘특허 절벽((Patent Cliff)’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경쟁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³⁾.

- 이러한 시장 확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2025년 9월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⁴⁾」을 통해 인력

2)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발췌(2025.9.5.)

3) ‘특허 절벽: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공략하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2025.12.)
특허 절벽(Patent Cliff)이란 제품의 특허 보호가 만료되면서 수익이나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쟁사가 복제약 또는 유사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말함. 특허는 20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하지만, 만료되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거대 제약사들에게 상당한 시장 점유율과 이익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4) 참고2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추진방향 p57

양성을 포함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규제개선, 기술-인력-자본 연계, 사업화 지원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8월에는 첨단바이오를 「미래성장동력 7대 SEED⁵⁾」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하고, 2030년 AI바이오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목표로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한편,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과 생산시설이 집적되면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였으며, 2024년 기준 인천지역 제약·바이오산업의 생산액은 약 7.7조원으로 전국 생산액의 61.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생산액이 118.9% 증가(3.5조원→7.7조원)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함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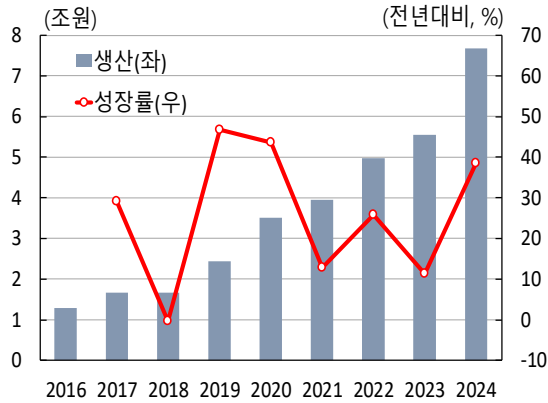
5) 7대 SEED: 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

연번	분야	구성	주요 추진 내용
1	미래 청정 에너지 SEED	SMR	2035년 경수형 i-SMR 상용화,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
2		핵융합	-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실증로) 개발 2030년대 핵융합 전력 생산 실현
3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 태양광(초고효율), 수소(수전해 시스템 국산화) - 풍력(경제성), 전력 그리드(산업화)
4	차세대 프론티어 SEED	양자	2029년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 2035년 양자 칩 제조 1위
5		우주·항공	2030년 달 착륙, 2035년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 차세대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
6		첨단바이오	2030년 AI바이오 인프라 구축 2035년 BCI 제품 상용화
7	대도약의 기반 SEED	첨단 공급망 (핵심광물 소부장)	- 첨단산업용 소재, 희소자원 대체·저감 소재 - 광물 안보망, 시장 창출

6) 이동재,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 바이오 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2026.7.)

<인천지역 제약·바이오 산업 현황>

인천지역 제약·바이오 산업 생산 및 성장률



자료: 산업통상부·한국바이오협회

주요 지역별 제약·바이오 산업 생산¹⁾

	(억원, %)	
	생산 ²⁾	최근 성장률 ³⁾
전 국	124,235 (100.0)	16.0%
인천	76,799 (61.8)	21.6%
인천 외 전국	47,435 (38.2)	9.0%
충북	17,193 (13.8)	2.1%
경기	13,148 (10.6)	15.7%
서울	5,001 (4.0)	3.7%
강원	3,513 (2.8)	22.5%
경북	3,026 (2.4)	4.0%
대전	2,685 (2.2)	44.5%

주: 1) 2024년 기준, 2) 괄호 안은 전국 대비 비중

3) 2020-2024년 중 연평균 성장률

자료: 산업통상부·한국바이오협회

○ 정부도 이러한 산업적 기반을 고려하여 2024년 인천·경기(시흥) 지역을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5개 권역 중 하나로 지정하고, 대량 생산과 수출을 담당하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 특히 인천·경기(시흥) 지역의 2035년까지 선도기업 투자계획은 25조 6,908억원으로, 5개 지역 투자계획의 약 70%에 해당함⁷⁾.

7) 이동재,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 바이오 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2026.7.)

<전국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자료: 산업통상부, 「인천 바이오 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2026.7.)에서 발췌

- 다만, 이와 같은 인천지역의 바이오산업 집적과 투자가 지속적
인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산·학·연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인천에 첨단 바이오과학기술 분야의 고급과학기
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교육·연구 교류, 기술
이전·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인천바이오
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인천의 바이오산업 기반과 교육·연구 역량
을 연계함으로써 국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체계

- 본 제정안은 별도의 장 구분 없이 40개의 본문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참고로 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4대 과학기술원법과 유사하며, 4대 과학기술원법도 모두 별도의 장을 나누지 않고, 조문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17조(지원·조정 등)까지에서 목적, 법인, 설립, 부설기관, 정관, 임원, 이사회 등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18조(학위과정 등)부터 제29조(학생)까지에서 학위과정, 교원 및 연구원, 학위수여, 학생, 과학영재학교 등 학위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제30조(기금의 설치 등)부터 제3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까지에서 기금, 기부, 공동연구,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등 기타 과학기술원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부터 제40조(과태료)까지에서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비밀유지의 의무, 벌칙, 과태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제1조 목적
제2조 법인
제3조 설립
제4조 부설기관
제5조 정관
제6조 임원
제7조 이사회
제8조 총장
제9조 평의원회
제10조 사업연도
제11조 출연금
제12조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3조 수익사업
제14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5조 창업지원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 지원·조정 등
제18조 학위과정 등
제19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제20조 학력의 인정
제21조 교원 및 연구원
제22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교원의 임면
제24조 교원인사위원회
제25조 정년보장교원
제26조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제27조 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제28조 학위수여
제29조 학생
제30조 기금의 설치 등
제31조 기부 등
제32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33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34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37조 「민법」의 준용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 벌칙
제40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부칙 제2조 설립준비

3. 총괄 검토의견

-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의 과학기술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추가로 설립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천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기능을 확충하여 산업과 연계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특히 해외 주요 바이오클러스터에서도 산업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바이오산업의 성장에 대응하여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됨.
- 주요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A*STAR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형 고급인력을, 미국 보스턴과 아일랜드 더블린은 각각 산업수요에 기반한 실무·공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기반을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주요 인력 양성 기관 및 특징 >

지역	기관	인력 양성 체계 특징	지원 방식	주요 목표
싱가포르	A*STAR ¹⁾	·국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소·산업계를 연계한 바이오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	·장학금, 연구비, 글로벌 연구자 유치, 산학공동연구 등을 지원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의 원활한 산업계 유입

8) 싱가포르의 과학기술연구청으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공공부문 연구개발(R&D) 기관임.
The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 is Singapore's lead public sector R&D agency (홈페이지 <https://www.a-star.edu.sg/about> 발췌)

지역	기관	인력 양성 체계 특징	지원 방식	주요 목표
		·박사과정 장학금 프로그램, 연구소 기반 연구훈련, 해외연수 등을 통해 고급 연구 인력을 육성	·SkillsFuture와 연계한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운영	·바이오 연구개발의 사업화 역량까지 포괄하는 전주기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
미국 보스턴	MassBio Ed ²⁾	·지역 바이오산업 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인력 양성에 특화 ·대학 졸업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 비전공자, 재직자 대상 단기훈련, 현장실습 등을 운영	·보스턴시의 Life Sciences 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 등과 연계해 교육·훈련·취업 프로그램을 지원(교육비 지원, 채용연결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채용 연계형 교육과 무료 실습 프로그램 제공 ·비전공자 및 지역 주민을 단기 훈련하여 현장 기술자로 전환하는 '기회의 사다리' 역할
아일랜드 더블린	NIBRT ³⁾	·실제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과 유사한 실습환경에서 바이오 공정 중심 교육을 제공 ·재직자 재교육 및 기업 맞춤형 단기교육에 강점	·아일랜드 정부 및 산업훈련 체계와 연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 ·Skillnet Ireland를 통해 재직자 역량 강화를 지원 (교육비 보조 등)	·실제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습형·업스킬링 중심의 교육 제공 ·글로벌 바이오 기업 대상 교육 허브 역할 수행

주: 1)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국가연구기관)를 중심으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 2) Massachusetts Biotechnology Education Foundation 3)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자료: 이동재,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 바이오 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2026.7.)

○ 다만, 해외에서도 전문인력 양성방식은 국가연구기관, 산업계 연계 교육기관, 전문훈련기관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인천지역 바이오 분야의 산·학·연 협력 및 인재양성 기능 강화 등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위해 기존 4대 과학기술원에 더하여 인천에 과학기술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인천에 이미 기존 대학과 바이오 분야의 교육·연구 기반이 구축되어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에 별도의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인천에는 이미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⁹⁾ 등 바이오 분야의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도 연구장비·공동연구 등 바이오 분야의 연구·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의 목적인 ‘첨단바이오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양성 및 산업 연계 등’을 위해 별도의 과학기술원을 신설하기보다, 인천에 소재한 기존 대학·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인천지역의 바이오산업 기반과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둘째, 수도권인 인천에 과학기술원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 연구·인재양성 기반의 지역 간 분포 및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9) 특히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는 국책사업(K-NIBRT 사업, 복지부·산업부)의 일환으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가 구축되어있으며, 인하대학교의 첨단바이오의약학과, 인천대학교의 생명과학기술대학 등에서 바이오산업 관련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이 추진되고 있음.

- 현재 4대 과학기술원은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의 광주과학기술원, 대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의 울산과학기술원으로 국가는 각 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연구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4대 과학기술원 현황 >

구 분	소재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2025년 기준)	대학·학부 등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대전광역시	2,819억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AI대학,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경영대학, 융합인재학부, 안보융합원 등
광주과학기술원 (GIST)	광주광역시	1,185억원	정보컴퓨팅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생명·의과학융합대학, 인문사회과학부, 융합기술원 등
대구경북과학기술 술원 (DGIST)	대구광역시	1,156억원	기초학부(기초과학, 기초공학, 인문사회 등 기본 교육 이수 후 전공 설계), 교양학부, 반도체공학과 등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울산광역시	1,081억원	학부대학(인재융합학부, 미래학부, 인문학부), 공과대학, 정보바이오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과학부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는 경남·부산 지역에 과학기술원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¹⁰⁾」이 2025년 2월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 강원·전북 지역에서도 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두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반영패

10) [2207901]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허성무의원 등 13인), 2025.2.4. 발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회부, 계류 중

기 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음¹¹⁾).

- 이처럼 지역별 과학기술원 신설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인 인천 지역에 추가로 과학기술원을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역 주도의 성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¹²⁾’을 추진하고 있는바, 수도권인 인천에 과학기술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이 지역간 과학기술 연구·인재양성 기반의 균형있는 확충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간 학생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11) [220438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송기현의원 등 105인) 안 제34조의3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221194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안 제77조의4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12)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2025.9.),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 5극: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3특: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대학)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분야 ‘특성화 대학원-학부-연구소’ 운영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학령인구는 2015년 892만 명에서 2025년 698만명, 2035년에는 48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과학기술원은 이공계 우수인재를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만큼, 새로운 과학기술원이 추가로 설립될 경우 기존 4대 과학기술원뿐 아니라 수도권 및 지역 대학과의 우수학생 확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넷째, 과학기술원 설립에는 초기 시설·장비 구축비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에도 운영비 등에 지속적인 국가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만큼,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와 국가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원은 초기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교원·연구인력 확보와 연구시설 운영 등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과학기술원(DGIST)의 경우 설립·운영 초기 5년간 3,236억원

(시설비 1,524억원+운영비 1,712억원)¹³⁾의 정부재정을 투입한 선례가 있으며, 2022년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경우 시설비 6,21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31년까지 운영비 약 1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원 설립이 ① 타 지역과의 형평성, ② 기존 대학과의 관계, ③ 대규모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 만큼, 지역대학과의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의 충분한 사전검토·협의를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3) DGIST는 '04년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된 후 '08년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 기관으로, 출연연 설립 소요비용 472억원('04~'07.) 외에도 '08~'12년 간 3,236억원의 재정 투입

V. 주요 항목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치 목적을 ①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 ②산업계와 합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바이오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검토 의견

- 제정안은 제1조에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치 목적을 ①첨단바이오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 ② 산업계와 합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4대 과학기술원법과 동일하게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 교육·연구교류 및 산업계와의 협력 등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되, 그 대상 분야를 첨단바이오과학기술로 특정하여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한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설립 당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의 발전 등을 목적조항에 명시하고 있음.

- 반면, 제정안은 인천지역의 바이오산업 기반과의 연계를 주요 설립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목적조항에는 지역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비수도권 과학기술원과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정안과 다른 과기원의 설치 목적 비교 >

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첨단바이오 과학 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u> 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u>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u> 하기 위하여 <u>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설립</u>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u>첨단과학기술 혁신</u> 과 <u>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u> 을 주도할 <u>고급 과학 기술 인재</u> 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u>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u> 하기 위하여 <u>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u>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 기술 인재</u> 를 양성하고 <u>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u> 을 위하여 <u>지식 기반 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u> 하며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u>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u> 하기 위하여 <u>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u>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 기술 인재</u> 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u>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u> 하기 위하여 <u>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u>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 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u>고급과학기술인재</u> 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u>국가 과학 기술 저력 배양</u> 을 위한 <u>기초·응용연구</u> 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u>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u>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 및 설립(안 제2조·제3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2조는 신설하고자 하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이 그 자체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고, 설립등기와 그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조(법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이하 "바이오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바이오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바이오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안 제2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다른 과학기술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안 제3조는 설립등기를 법인 성립의 요건으로 명확히 하고, 등기사항·등기기간 등 세부적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 두 조항 모두 현행 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입법방식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제정안 및 다른 과학기술원과 달리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이유에 대하여 해당 과기원은 지역균형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지역 출연(연)으로 설립된 후 과기원으로 전환된 기관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¹⁴⁾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정안과 다른 과기원의 법인격 비교 >

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법인	법인	재단법인	법인	법인

-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음¹⁵⁾.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15) 법제처, 「책자형 생활법령」

- 그런데, 제정안을 포함한 다른 3개의 과학기술원의 경우도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을 법인격으로 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기관 경영 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어 보임¹⁶⁾.

3. 부설기관 및 정관(안 제4조·제5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4조는 바이오과학기술원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부설기관을 포함한 목적·명칭·업무·재산 및 회계 등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정관 변경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4조(부설기관) 바이오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바이오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16)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4조(「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6조(「민법」의 준용)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안
5.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바이오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검토 의견

-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인 동시에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정안은 기관의 목적, 조직·인사, 재산·회계 등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도 받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과 고등교육정책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는 현행 4대 과학기술원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4. 임원, 이사회 및 총장(안 제6조·제7조·제8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6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7조는 이사회가 임원의 선임·해임, 예산·결산, 중요 재산의 관리, 정관 변경 등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안 제8조는 총장을 두어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6조(임원) ① 바이오과기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바이오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바이오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이사회) ① 바이오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제정안

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총장) ① 바이오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바이오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제정안은 바이오과학기술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관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며, 이사장과 총장의 겸직을 금지하여 기관

의 의사결정·감독 기능과 업무 집행 기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4대 과학기술원법이 모두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점을 고려하여 안 제7조의 이사회에 관한 규정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¹⁷⁾.

< (입법례) 「울산과학기술원법」 >

제7조(이사회) (생략)

<제7조의2 신설 2026.8.11., 시행 2027.2.12.>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2명 이상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내용·방식, 배부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기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7) 다만, 이 경우 안 제8조(총장)부터 이하의 조문 번호가 각각 하나씩 순연되므로 이에 따른 전반적인 조문 정비가 필요함.

5. 평의회(안 제9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9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에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 교원·직원·연구원·학생의 복지 등 기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의회를 두고, 교원·직원·연구원·학생 등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9조(평의회) ① 바이오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직원·연구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바이오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평의회는 11명 이상의 평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 동문 및 바이오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평의회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 ④ 평의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평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현행 4대 과학기술원법의 평의회회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한국 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은 연구원을 직원에 포함하여 교원·직원·학생을 각각의 구성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연구원을 직원과 구분하여 독립된 구성단위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안 제9조는 평의회회 구성에서 연구원을 직원과 별도의 구성단위로 규정하여 이 중 광주과학기술원과 동일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음.

< 제정안과 다른 과기원의 평의원 구성단위 비교 >

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교원·직원·연구원 ·학생	교원·직원·학생	교원·직원·학생	교원·직원·연구원 ·학생	교원·직원·학생

○ 다만, 제정안이 연구원을 독립된 평위원회 구성단위로 규정하여 연구원의 대표성을 강화한 것은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과학기술원으로서 연구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며, 구체적인 구성원별 대표 수는 향후 기관의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관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사업연도 및 출연금(안 제10조·제11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0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를 국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10조(사업연도) 바이오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바이오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먼저, 안 제10조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4대 과학기술원의 입법례에 따라 국가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출연금 교부 및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 다만, 「고등교육법」¹⁸⁾ 및 「사립학교법」¹⁹⁾ 등에 따라 대학의 학년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도 회계연도를 이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법인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학과 같이 학년도와 사업연도를 일치시킬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원은 국가 출연금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이고, 4대 과학기술원 모두 사업연도를 국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음, 안 제11조는 국가가 특정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²⁰⁾가 있어야 하므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에 국가 출연금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규정임.

○ 다만, 다른 유사한 과학기술원과 비교할 때 연간 1,000억원 가

18)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9)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연도에 따른다.

20)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량의 출연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대 과학기술원의 전체 예산 및 출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가 큰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의 전체예산 및 정부 출연금 규모는 유사한 수준임.
- 2025년 정부 출연금은 한국과학기술원(2,81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학기술원이 각각 광주과학기술원 1,181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46억원, 울산과학기술원 1,081억원으로, 1,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약 1,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재정여건과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1년~2025년 4대 과기원 정부 출연금 및 전체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한국과기원 (KAIST)	광주과기원 (GIST)	대구경북과기원 (DGIST)	울산과기원 (UNIST)	합계
'21년	정부 출연금	227,885	101,555	87,291	80,958	497,689
	전체 예산	985,997	252,720	205,647	299,694	1,744,058
'22년	정부 출연금	239,231	103,486	90,299	87,513	520,529
	전체 예산	1,093,522	267,461	219,595	333,678	1,914,256
'23년	정부 출연금	228,489	112,301	93,839	89,959	524,588
	전체 예산	1,163,362	275,539	222,091	354,784	2,015,776
'24년	정부 출연금	229,743	106,030	104,802	91,906	532,481
	전체 예산	1,174,854	259,729	234,431	342,760	2,011,774
'25년	정부 출연금	281,896	118,165	114,600	108,144	622,805
	전체 예산	1,373,112	291,151	273,762	382,002	2,320,02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안 제12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2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그 물품을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2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이오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바이오과학기술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안 제12조를 규정할 경우 국유재산, 공유재산, 물품의 양여,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둬으로써,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2조와 같이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및 사용·

수익에 관한 특례²¹⁾를 두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같은 법 별표²²⁾에 제정안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함.

-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는 4대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양여 등의 특례와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으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정안을 추가하고 특례유형 및 존속기한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4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1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 *제15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79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1)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22)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한편, 안 제12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립 시 공유재산의 특례를 두는 해당 조항은 수용한다는 입장임.

8. 수익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창업지원(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3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는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안 제15조는 과학기술원의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3조(수익사업) ① 바이오과기원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바이오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바이오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바이오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4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바이오과기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창업지원) ① 바이오과기원은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과학기술원의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므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안 제13조~제15조)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13조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되,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제한하고, 별도 법인의 활동도 인천바이오과기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14조와 관련하여 최근 4대 과학기술원법은 각 과학기술원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 포함)의 기술이전 및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²³⁾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제정안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광주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광주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광주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5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둘째, 안 제15조는 교원·직원·학생을 창업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원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안 제9조(평의회) 등에서 연구원을 교원 및 직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 구성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구원 역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만큼 ‘연구원’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23) 본회의 의결(2026.8.20.)

9.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지원·조정 등(안 제16조·제17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6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이 매 사업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결산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17조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주부부처로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지원·육성하고, 업무에 대한 조정·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바이오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이오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7조(지원·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바이오과기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나. 검토 의견

-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은 국가 등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성격이 유사한 4대 과학기술원과 같이 사업계획·예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사전 승인과 결산에 대한 외부 회계검사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기관의 지원·육성 및 그 업무의 조정·감독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 또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결산거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한 것도 타당해 보임.

10. 학위과정 및 학생 등(안 제18조·제28조·제29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8조·제28조·제29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학위과정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며,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안 제18조제3항은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8조(학위과정 등) ① 바이오과기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學科)·전공 및 교과(敎科)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28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29조(학생) 바이오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토 의견

-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부 산하 학교가 아닌 특별법에 의해 특수형태로 설립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과 같이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와 동시에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의 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졸업 학생들이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하고, 이 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과 같이 대학과 유사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조문 체계의 명확성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법」과 같이 학생에 관한 안 제29조를 학위과정에 관한 안 제18조보다 앞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8조제3항은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다시 학위수여와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다시 총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학생의 입학 등에 대한 규정을 먼저 두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을 적용하도록 조문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명확해 보임.

< 제정안과 다른 과기원의 학사과정 및 학생 등 조항 >

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8조(학위과정 등) 제28조(학위수여) 제29조(학생)	제10조(학위수여) 제11조(학생) 제16조(학위과정 등)	제2조의2(학위과정 등) 제12조의9(학위수여) 제12조의10(학생)	제13조(학위과정 등) 제16조(학위수여) 제17조(학생)	제14조(학위과정 등) 제17조(학위수여) 제18조(학생)

○ 둘째, 안 제28조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24)상 전문석사는 석사학위의 하부 유형에 해당하므로, 별개로 명기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여,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학위 중 ‘전문석사’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학위의 종류)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11.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안 제19조·제20조·제26조·제27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졸업자에게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6조 및 제27조는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및 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9조(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바이오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바이오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제20조(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

제정안

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현재 4대 과학기술원법에도 모두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바이오과기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인천에 이미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²⁵⁾와 2개의 과학고등학교²⁶⁾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실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과학영재교육기관과의 기능 중복 및 학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4대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유일하게 운영되고

25)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자율로 정해지며,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와는 근거법 등에 차이가 있음.

26)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과학 분야의 특수목적고로 수학·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 광역시·도 단위로 선발하므로 인천의 경우 인천과학고와 인천진산과학고만 지원 가능. 전기 전형고로 다른 전기 학교와 동시 지원 불가.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

있음.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충북 AI·바이오 과학영재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AI 영재학교 추진 내역>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31-401)	충북 AI BIO 과학영재학교 설립	2024~2029	58,464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5)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신설	2024~2029	76,45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교원·연구원 및 교원인사 등(안 제21조~제25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 등의 교원과 연구원을 두도록 하고,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 수립, 교원의 임면 및 재임용 절차,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정년보장교원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1조(교원 및 연구원) ① 바이오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제정안

② 바이오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研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바이오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교원의 임면) ① 바이오과기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바이오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제정안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교원인사위원회) ① 바이오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나. 검토 의견

- 제정안은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과 연구원을 두고, 교원의 임면·재임용 및 정년보장 등에 관한 절차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분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임.

- 또한, 안 제22조는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총장이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원 구성의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13. 보칙 및 벌칙(안 제35조~제40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비밀유지의 의무, 「민법」의 준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9조는 벌칙, 안 제40조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바이오과기원이 아닌 자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바이오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민법」의 준용) 바이오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바이오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정안
제40조(과태료) ① 제35조를 위반하여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나. 검토 의견

○ 제정안의 보칙 및 벌칙 규정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울산과학기술원법」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조문의 배치 순서에 차이가 있음.

- 그런데, 안 제38조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보칙적 성격의 규정인 만큼, 이를 벌칙 조항보다 앞에 배치한 제정안의 조문 순서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참고) 「울산과학기술원법」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37조(「민법」의 준용)	제25조(「민법」의 준용)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제26조(벌칙)
제40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한편, 안 제36조 및 38조는 비밀유지 의무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을 4대 과학기술원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정안은 안 제9조(평의위원회), 안 제21조(교원 및 연구원) 등에서 연구원을 직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라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부칙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의 부칙은 총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일 및 설립준비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바이오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준비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설립준비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정안

- ③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바이오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설립 당시의 바이오과기원의 총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사 및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 설립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⑦ 설립준비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바이오과기원의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⑧ 설립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나. 검토 의견

- 먼저, 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상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²⁷⁾. 다만, 2007년 「울산과학기술원법」 제정 당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 입법례²⁸⁾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7) 「법제기준과 실제」(2024.5.) 국회사무처 법제실, p821

28)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8331호, 2007. 4. 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음, 부칙 제2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립 전 이사회 등 본칙에 따른 기관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립준비위원회를 두고 초대 총장·이사·감사의 임명 및 설립등기 등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다만, 부칙 제2조제5항에서는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천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으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9

참고1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KS J 1009)

대분류		중분류	
코드	분류명	코드	분류명
1	바이오의약산업		
		1010	바이오항생제
		1020	바이오 저분자량 의약품
		1030	백신
		1040	호르몬제
		1050	치료용 항체 및 사이토카인 제제
		1060	혈액 제제
		1070	세포 기반 치료제
		1080	유전자 의약품
		1090	바이오 진단 의약품
		1100	효소 및 생균 의약품
		1110	바이오소재 의약품
		1120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1000	기타 바이오의약품
2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2010	바이오 고분자 제품
		2020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2030	연구·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2040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 화학 제품
		2050	바이오농약 및 비료
		2060	바이오연료
		2000	기타 바이오화학·에너지 제품
3	바이오식품산업		
		3010	건강 기능 식품
		3020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3030	식품 첨가물
		3040	발효 식품
		3050	사료 첨가제
		3000	기타 바이오식품
4	바이오환경산업		
		4010	환경 처리용 생물 제제 및 시스템
		4020	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
		4030	환경 처리, 자원 재활용 제제 및 시스템
		4040	환경 오염 측정 기구 및 진단, 서비스
		4000	기타 바이오환경 제품 및 서비스
5	바이오의료기기산업		
		5010	바이오센서
		5020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5030	바이오센서/마커 장착 의료기기

대분류		중분류	
코드	분류명	코드	분류명
		5000	기타 바이오의료기기
6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6010	유전자/단백질/펩타이드 분석·합성·생산·기기
		6020	세포 분석·배양 장비
		6030	다기능 및 기타 분석 기기
		6040	연구 및 생산 장비
		6050	공정용 부품
		6000	기타 바이오장비 및 기기
7	바이오자원산업		
		7010	종자 및 묘목
		7020	유전자 변형 생물체
		7030	실험 동물
		7000	기타 바이오자원
8	바이오서비스산업		
		8010	바이오 위탁 생산·대행 서비스
		8020	바이오 분석·진단 서비스
		8030	임상·비임상 연구개발 서비스
		8040	기타 연구개발 서비스
		8050	가공 및 처리·보관 서비스
		8000	기타 바이오서비스업

참고2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추진방향(2025.9.)

비전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목표 (~'30)

- ▶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 ▶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 ▶ 글로벌 임상시험 3위 달성

핵심 과제	혁신을 촉진하는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대전환	■ 제품 개발 가속화를 위한 규제 개선 - AI 활용 의약품 규제 로드맵 마련,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 완화 등 ■ 심사 과정의 고도화·투명성 제고 - AI 심사 도입, 허가심사팀 운영 및 심사인력 확충 등 ■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지원 - 이중약가제도 확대, 허가-평가-협상 동시진행 제도화, CDMO 기업 해외진출 지원 규제 마련 등
	기술-인력-자본 연계로 혁신 성장 가속화	■ AI 신약 개발 등 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 AI 기반 신약 개발 전주기 지원, 자율 실험실 구축, 데이터 수집-표준화-활용 인프라 활성화 등 ■ 신기술·현장 수요 기반 인재 양성 및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AI-바이오 융합 등 핵심인력 양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부 펀드 확대 및 펀드 간 연계 강화 등
	앵커-바이오텍 기업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초격차 확보 위한 제조 혁신과 사업화 지원 - CDMO 총력 지원, AI 융합 제조 공정 디지털 전환, 오픈이노베이션으로 바이오벤처 스케일업 등 ■ 바이오 안보를 위한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 - 의약품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mRNA 백신 플랫폼 개발, 해외 현지 거점 및 네트워크 강화, 특허 확보 지원 등

참고3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일반 현황

기능 및 주요업무

-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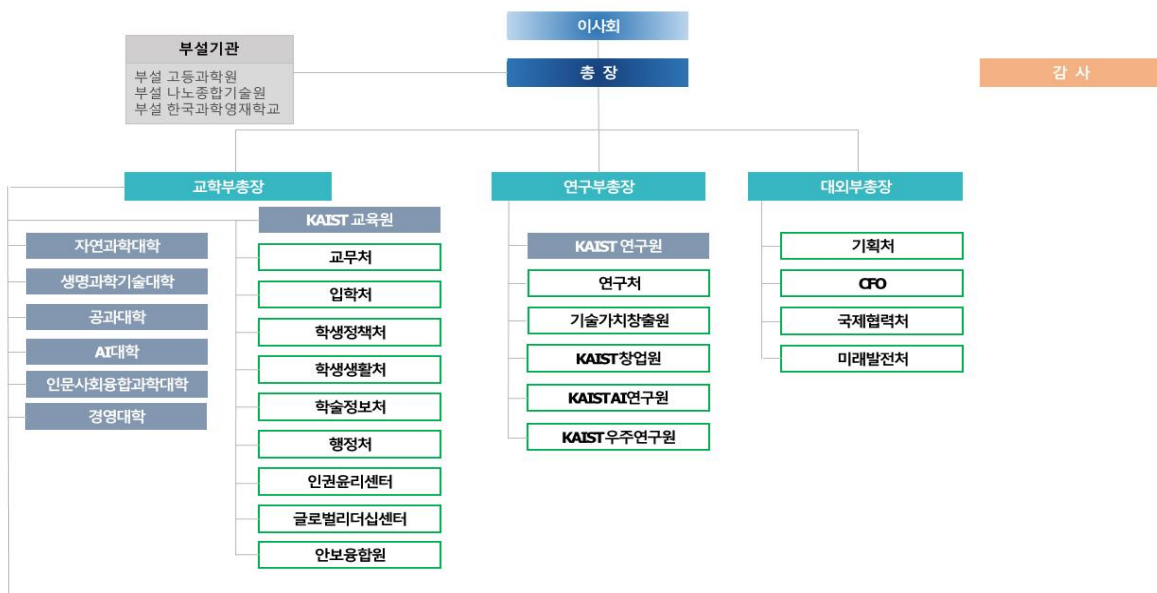
설립 근거

- 설립근거 : 한국과학기술원법(법률 제3310호)
- 설립일 : 1971.02.16

조직 및 인력

- 조직 현황

총장	감사	부총장	단과대학	처/원	부설기관
1	1	3	6	20	3



- 인력 현황

(‘26. 6. 30. 기준, 단위 : 명)

구분	임원*	교원				직원			합 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계	정규직	무기직	소계	
현원	2	333	287	122	742	523	369	892	1,636

* 상근

□ 2026년 예산

수입		지출	
구분	금액(백만원)	구분	금액(백만원)
I. 정부출연금	322,740	I. 기관운영비	252,132
II. 자체수입	1,164,385	II. 일반사업비	1,211,772
III. 이월금	121,754	III. 시설비	144,975
합 계	1,608,879	합 계	1,608,879

□ 재학생 현황

(단위 : 명)

과정	학사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	합계
인원	4,085	3,776	1,790	2,979	12,630

□ 졸업생 현황

(단위 : 명)

학위연도	학사	석사	박사	계
2026.2.	444	1,223	490	2,157
1975~2025.8.	22,558	42,135	17,640	82,333
누계	23,002	43,358	18,130	84,490

□ 시설 현황

(단위 : m² / 평)

구분	본교	문지	서울	계
부지	1,151,162 (348,225평)	279,007 (84,399평)	110,359 (33,383평)	1,540,528 (466,007평)
건물	630,042 (190,587평)	121,842 (36,857평)	62,373 (18,868평)	814,257 (246,312평)
교육연구시설	384,193 (116,218평)	97,364 (29,452평)	41,063 (12,422평)	522,620 (158,092평)

참고4

광주과학기술원(GIST) 일반 현황

□ 기능 및 주요업무

-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 지원(광주과학기술원법 제1조)

□ 설립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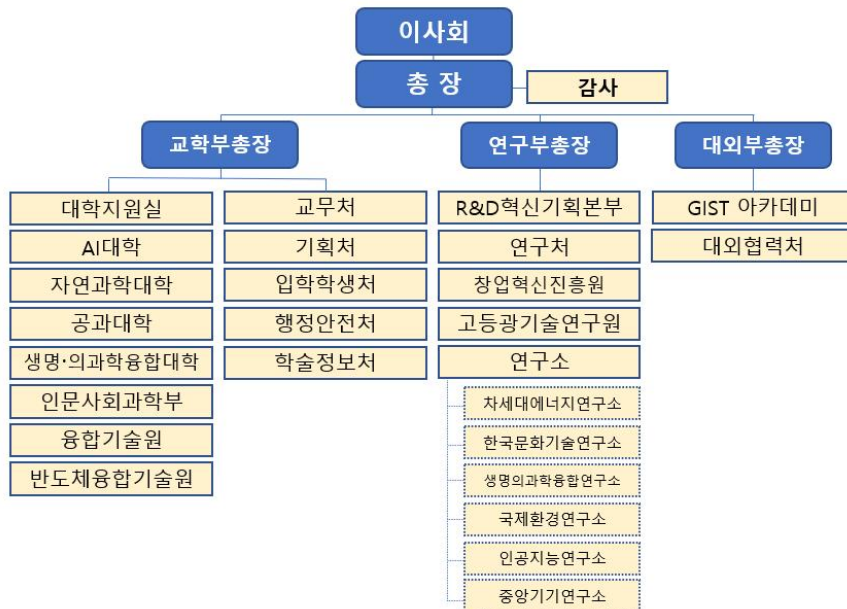
- 설립근거 :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제4580호)
- 설립일 : 1993.11.17

□ 조직 및 인력

- 조직 현황

(2026. 6. 30. 기준)

총장	감사	부총장	교육	행정	연구
1	1	3	4단과대학 1학부 17학과 2원	7처, 1원	1원 6연구소



- 인력현황

(2026. 6. 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임 원*	교 원	직 원		연구원	계
			정규직	무기직		
현 원	1	191	109	123	35	459

* 상근

□ 26년 예산

수입		지출	
구분	금액(백만원)	구분	금액(백만원)
I. 정부출연금	155,456	I. 기관운영비	127,790
II. 자체수입	146,626	II. 연구사업비	143,190
III. 이월금	53,416	III. 일반사업비	39,088
		IV. 전략연구사업	6,555
		V. 시설비	38,875
합 계	355,498	합 계	355,498

□ 재학생 현황

(2026. 6. 30. 기준, 단위 : 명)

과정	학사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	합계
인원	1,007	509	544	350	2,410

□ 졸업생 현황

(2026. 6. 30. 기준, 단위 : 명)

과정	학사	석사	박사	계
연도				
2026.2.	108	130	70	308
1997.2 ~ 2025.8.	1,492	5,271	2,095	8,858
누계	1,600	5,401	2,165	9,166

□ 시설 현황

(2026. 6. 30. 기준, 단위 : m² / 평)

구분	본교	캠퍼스	계
부지	631,041m ² (190,889평)	-	631,041m ² (190,889평)
건물	270,886m ² (81,942평)	-	270,886m ² (81,942평)
교육연구시설	168,138m ² (50,861평)	-	168,138m ² (50,861평)

※ 자연과학동 (BTL) 포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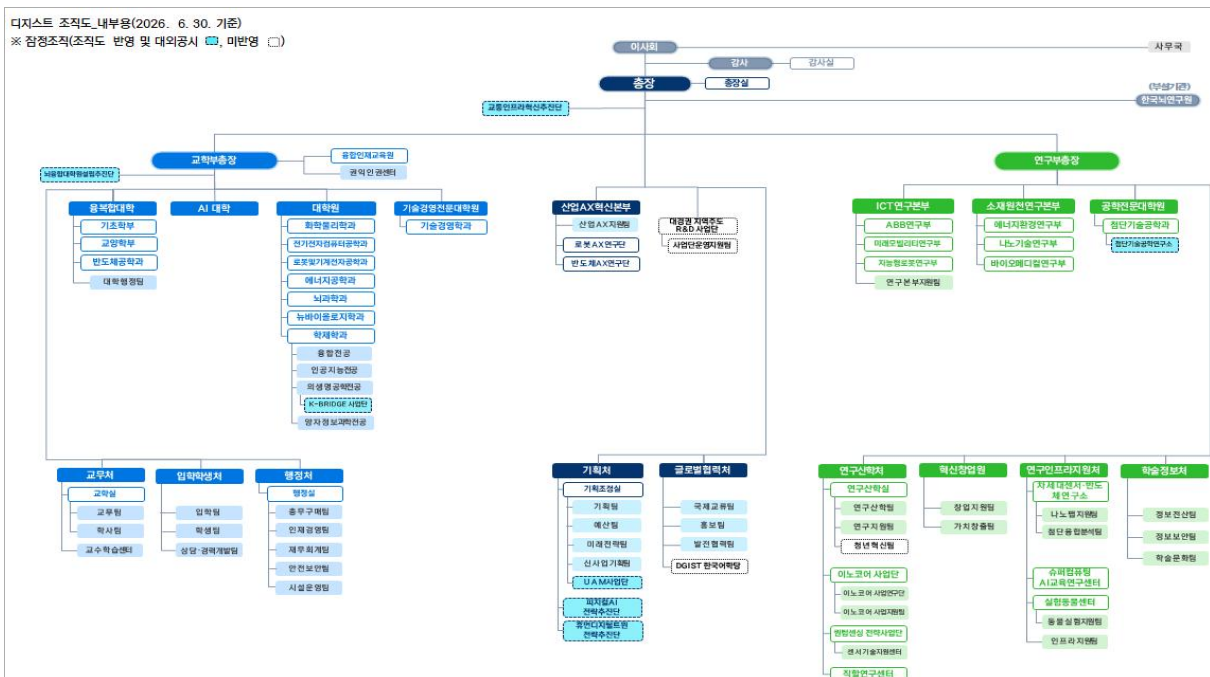
-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 연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 설립근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제6996호)
- 설립일 : 2004.09.07

- ## ○ 조직 현황

(2025.4.1. 기준)

총장	감사	부총장	대학	대학원	처/본부/단	부설기관
1	1	2	2	3	12	1



(2026.6.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임원*	교원	연구원		직원			계
			정규직	전임직	정규직	전문·전임직	운영직	
현원	1	173	80	48	105	110	72	589

*상근

□ 26년 예산

수 입		지 출	
구 분	금액(백만원)	구 분	금액(백만원)
I. 정부출연금	138,564	I. 기관운영비	76,133
II. 자체수입	128,561	II. 사업비	216,843
III. 이월금	65,111	III. 시설비	39,260
합 계	332,236	합 계	332,236

□ 재학생 현황

(2026.6.30. 기준, 단위 : 명)

과 정	학 사	석 사	박 사	통 합	학위연계	합계
인 원	966	468	208	442	46	2,130

□ 졸업생 현황

(2026.6.30. 기준, 단위 : 명)

학 위	학 사	석 사	박 사	계
연 도				
2026.2.	131	103	59	293
1975 ~ 2025.8.	1,187	1,016	507	2,710
누 계	1,318	1,119	566	3,003

□ 시설 현황

(2026.6.30. 기준, 단위 : m² / 평)

구 분	본 교	캠퍼스	계
부 지	671,275m ² (약 203,061평)	-	671,275m ² (약 203,061평)
건 물	288,652.41m ² (약 87,317평)	-	288,652.41m ² (약 87,317평)
교육연구시설	206,144.33m ² (약 62,359평)	-	206,144.33m ² (약 62,359평)

참고6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일반 현황

□ 기능 및 주요업무

-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기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를 촉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

□ 설립 근거

- 설립근거 : 울산과학기술원법
- 설립일 : 2007.09.13.

□ 조직 및 인력

- 조직 현황

총장	감사	부총장	단과대	학과	학부	행정팀	교학팀/행정실	센터(실)	부속시설
1	1	2	3	19	2	36	3/21	6	3



- 인력 현황

구 분	임 원	교 원	직 원				계
			행정직		연구직	운영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현 원	2	340	170	220	-	21	753

□ 26년 예산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액(백만원)	구 분	금액(백만원)
I. 정부출연금	145,384	I. 기관운영비	175,474
II. 자체수입	248,494	II. 연구사업비	175,673
III. 전기이월자금	35,178	III. 일반사업비	57,044
		IV. 시설비	20,795
		V. 기타사업	70
합 계	429,056	합 계	429,056

□ 재학생 현황

(단위 : 명)

과 정	학 사	석 사	석·박사통합	박 사	합 계
인 원	2,004	585	1,411	311	4,311

□ 졸업생 현황

(단위 : 명)

과 정 연 도	학 사	석 사	박 사	계
2026.2.	239	212	119	570
2010.8.~2025.8.	6,571	2,530	1,546	10,647
누 계	6,810	2,742	1,665	11,217

□ 시설 현황

(단위 : m² / 평)

구 분	본 교	캠퍼스	계
부 지	1,023,991m ² /약 309,757평	17,666m ² /약 5,344평	1,041,657m ² /약 315,101평
건 물	361,402m ² /약 109,324평	13,456m ² /약 4,070평	374,858m ² /약 113,395평
교육연구시설	242,274m ² /약 73,288평	13,456m ² /약 4,070평	255,729m ² /약 77,358평